

전주지방법원 2015. 6. 24 선고 2015가단10075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 2015. 6. 2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
가. 전주시 덕진구 C 답 334m²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가)부분 75m² 지상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 지붕 단층 주택을 철거하고, 위 지상에 식재된 수목(소나무)를 수거하며, 위 토지를 인도하라.

나. 2013. 3. 23.부터 위 가.항 기재 토지 인도완료시까지 매월 5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박세진

별지